

심장초음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인증의 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심장초음파 부문 '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인증의' (이하 '전공의 교육인증의') 자격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전공의 교육인증의는 다음과 같은 능력 및 자격을 지닌 내과전문의로 정의한다.

- (1) 주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중증도 판단 가능
- (2) 심초음파를 이용한 적절한 임상적 판단 및 결정 가능
- (3) 심초음파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

제 3 조 (인증의관리위원회)

전공의 교육인증의의 자격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인증의관리위원회를 둔다.

- (1) 인증의관리위원장은 한국심초음파학회 교육수련이사가 겸임하며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(2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
제 4 조 (자격인증 방법)

- (1) 전공의 교육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인증의관리위원회는 자격인증 요건에 따라 심사한다.
- (2)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전공의 교육인증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증을 교부한다.

제 5 조 (인증 분야 및 요건)

전공의 교육인증의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으며 심초음파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아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.

- (1)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인 자.
- (2) 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내과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자.
- (3) 내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.
- (4) 최근 5년간 500건 이상의 심초음파 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력 소지자.
- (5) 최근 5년간 *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3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.
(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 지도인증의 교육평점) 기준
- (6) 최근 5년간 *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에 5회 이상 참여한 자.
또는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장혈관학 및 심초음파/심장영상 학회지에 심초음파 관련 논문 1편 (제1저자 및 교신저자) 이상을 게재한 자.

(7) 그 외, 인증의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인증의를 취득할 수 있다.

제 6 조 (지도인증의 자격심사)

- (1) 지도인증의 자격심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자격 취득을 위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.

제 7 조 (2018년도 전공의 교육인증의 인증)

제 5 조 7 항에 의거하여 2018 년도에 한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자는 인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.

- (1)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인 자.
- (2) 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내과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자.
- (3) 내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.
- (4) 최근 5년간 500건 이상의 심초음파 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력 소지자.
- (5) 최근 5년간 *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에 5회 이상 참여한 자
또는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장혈관학 및 심초음파/심장영상 학회지에 심초음파 관련 논문 1편 (제1저자 및 교신저자) 이상을 게재한 자.

제 8 조 (지도인증의 자격 갱신)

- (1) 지도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
- (2) 지도인증의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

본 규정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

2018 년도에 한해 한국 심초음파 (지도)인증의 자격을 보유한 자는 제 7 조의 기준 중 (1) ~ (4)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인증의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심사료는 면제된다.